

관련 근거 안내

I 회원단체 가입 및 임원인준에 따른 주요 자격 내용

가. 본회 정회원 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부여

- 본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, 동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 (고양시체육회 규약 제5조 3항에 의거)
- 본회 회원이 되려는 동체육회는 본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 (동체육회 규정 제5조 1항에 의거)

• [고양시체육회 규약 제5조]

제5조[조직]

- ① 종목단체는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, 종목단체는 정회원단체, 준회원단체 및 인정단체로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정회원단체”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(이하“총회”라 한다) 의결로서 회원가입을 확정된 단체를 말한다.
- ③ 본회 산하에 동체육회를 둘 수 있으며, 동체육회는 본회의 지회로 하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• [동체육회 규정 제5조]

제5조[조직]

- ① 동체육회는 본회의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- ② 동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친 후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.
- ③ 동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.
 1. 동체육회는 해당 동 1단체를 원칙으로 하며, 해당 동 거주자 및 해당 동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직장근무자 2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서 단체의 효력을 가진다.

◆ [고양시체육회 규약 제7조]

제7조[종목단체 및 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] 종목단체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경기도체육회 규약 제7조를 준용한다.

◆ [경기도체육회 규약 제7조]

제7조[도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의 권리와 의무] 도종목단체 및 시·군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.

◆ [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]

제10조[회원단체 및 시·도체육회의 권리와 의무]

- ① 회원단체 및 시·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 1. 체육회 총회에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 2. 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 3. 체육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 4.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할 수 있는 권리
 5.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체육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- ② 회원단체 및 시·도체육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 1. 체육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 2.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
 3.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또는 지회비를 납부할 의무
 4. 소관 지회 및 회원단체에 대해 체육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게 할 의무
-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재원은 체육회의 목적사업 수행 및 운영 외의 사용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④ 준회원단체는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권리를 제한받으며, 제2항제3호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.

나. 본회 총회의 **대의원** 자격 부여

- 동체육회장은 본회 총회의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. (고양시체육회 규약 제11조 1항에 의거)

◆ [고양시체육회 규약 제11조]

제11조[대의원]

-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 2. 제5조제3항에 따른 동체육회장의 장

다. 본회 회장의 선출 시 **선거인** 자격 부여

-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은 선거인 자격을 가진다. (고양시체육회 규약 제24조 3항에 의거)

◆ [고양시체육회 규약 제24조]

제24조[회장의 선출]

- ① 본회의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.
- ③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.
 3. 동체육회 대의원 중 추천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

II 동체육회 임원 구성 관련 규정

◆ [동체육회 규정 제18조]

제18조[임원]

- ① 동체육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1. 회장 1명
 2. 부회장 12명 이하(전문, 생활, 지역,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)
 3.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
 4. 감사 2명

Ⅲ 동체육회 대의원 구성 관련 규정

◆ [동체육회 규정 제7조]

제7조[총회의 구성 및 기능]

- ① 동체육회의 총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.
 - 1. 제5조제3항 제1호에 따른 정회원 중 선출된 사람
- 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7명 미만으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.